

**세아홀딩스 및 세아홀딩스 산하계열사**

**제3자 행동강령**

**(Third Party Code of Conduct**

**For SeAH Holdings and its Affiliates)**

본 제3자 행동강령은 윤리적 기반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,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 받으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며 고객과 직원, 협력회사 및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세아홀딩스 및 세아홀딩스 산하계열사(이하 "세아")의 확고한 의지를 담아 세아홀딩스 및 세아홀딩스 산하계열사 제3자 행동강령(이하 "본 행동강령")을 작성하였습니다. 세아는 당사의 임직원과 공급자(하위 공급망 포함), 계약 상대방, 사업 파트너 등 세아와 거래하는 다양한 제3자 파트너들과 함께 본 행동강령을 준수함으로써 '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 기업'이 되고자 합니다.

본 행동강령은 RBA(Responsible Business Alliance) Code of Conduct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, 만약 현지 법규와 내용이 상충한 경우,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.

## 1. 노동 인권

제3자 파트너는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. 이는 임시근로자, 이주근로자, 실습생, 파견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,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.

### 1.1 자발적 취업

- 제3자 파트너 내 모든 근로자의 근무와 작업은 자발적이어야 하며,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 없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인신구속계약(채무변제를 위한 숙박 포함) 등에 따른 강제 근로자, 노예,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,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일환으로 보증금이나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.
- 제3자 파트너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,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과 같은 신분 및 이민 관련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채용 또는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을 통해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제공해야 합니다.

## 1.2 아동근로 금지

- 제3자 파트너의 아동 근로자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. "아동"은 만 15세 또는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, 현지 법규에서 규정한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구성원 중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, 즉시 아동 근로자 고용을 중지하고, 고용 과정에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.

## 1.3 근로시간 준수

- 제3자 파트너는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에게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, 비상 또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, '탄력적 근무 시간' 협의로 다른 날에 대체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.
- 제3 파트너 구성원들의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.

## 1.4 임금 및 복리후생

-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의 임금에 최저임금, 초과 근로 수당,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,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초과 근무에 대해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가 알아보기 쉽게 급여 명세서에 임금 지급 기준 및 항목을 제공해야 하며,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.

## 1.5 인도적 대우

-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에게 성희롱, 성적 학대,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강압, 욕설, 체벌, 괴롭힘, 공개적 수치심, 폭언을 포함한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,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서는 안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의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.

## 1.6 차별 금지

- 제3자 파트너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채용과정과 임금, 보상, 승진, 교육 기회 등 고용 활동에서 인종, 나이, 피부색, 성별, 민족성, 성적 성향, 장애, 임신, 종교, 조합원 신분, 정치 성향,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,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교 활동을 허용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## 1.7 결사의 자유

- 제3자 파트너의 근로자는 현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, 제3자 파트너는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하고,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가 괴롭힘, 차별, 보복 및 위협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조건 및 경영방침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## 2. 안전 보건

제3자 파트너는 회사 업무상 이행되는 모든 활동 범위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필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. 또한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### 2.1 산업 안전

- 제3자 파트너는 안전 및 보건 위험(예: 화학물질, 전기, 화재, 차량 및 낙상 등)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을 위해 안전한 설계,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, 예방 정비, 안전 작업 절차(잠금장치, 보호장치) 및 규정 구축을 통해 파악, 평가 및 통제가 되어야 하며,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.

- 제3자 파트너는 위험 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경우, 근로자에게 위험 요소 관련 교육 자료와 작업 시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임신 또는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험 작업 환경에서 제외시키고,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해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.

## 2.2 비상사태 대비

- 제3자 파트너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, 근로자 공지 및 대피 절차 등을 마련하고, 예방을 위해 근로자 대상 비상 대피 훈련, 탈출 시설,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확보 및 복구 계획이 포함된 비상사태 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 후 이행하여,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

## 2.3 산업재해 및 질병

-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, 추적 및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여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보고를 장려하고, 산업재해 및 질병 사례를 분류하고 기록하며 의학적 치료 제공,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시정조치 이행하여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근로자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## 2.4 산업위생

- 제3자 파트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물리적, 화학적, 생물학적 인자, 고온, 방사선 등의 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잠재적 위험이 파악된 경우,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, 생산시설 개선 등의 기술적 통제와 법적 요건에 따른 행정적 통제를 통해 제어해야 합니다.
-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,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에게 위험요인 관련 교육 자료와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.

## 2.5 신체부담 업무

-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하거나,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장시간 서있는 작업, 체력 소모가 많은 업무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, 평가하며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## 2.6 위험기계,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

- 제3자 파트너는 생산에 필요한 기계,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이행해야 합니다.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, 물리적 보호 장치, 안전 장치 및 방호벽 등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.

## 2.7 위생, 식품 및 주거

-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를 제공하고,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식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, 적절한 조명, 냉난방 시설, 비상구, 개인 사물함, 합리적인 수준의 적절한 개인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

## 2.8 안전보건 교육

-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에게 모든 작업장 위험(기계, 전기, 화학물질,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)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 이후에는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, 근로자가 언제든지 안전보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.

## 3. 환경

제3자 파트너는 환경보호 법규 및 규정 준수하에 온실가스, 대기오염물질, 폐기물, 재활용, 산업용수 재사용 및 화학물질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. 또한 제품 생산 등 제조공정에서

있어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, 지역사회, 환경 및 천연자원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공공의 안전보건을 지켜야 합니다.

### 3.1 환경 인허가 취득

- 제3자 파트너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(예: 대기배출시설, 폐수배출시설 등) 및 등록사항을 취득, 유지, 관리하고 최신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.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 및 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
### 3.2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절감

- 제3자 파트너는 오염원의 배출 및 폐기물 발생시 오염원 제거 설비 추가, 공정 개선,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통해 최소화하거나 제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물, 화석 연료, 광물 및 원시림 산물 등의 천연자원을 생산 프로세스 개선, 설비 공정의 변경, 대체 자재 사용, 자재 재활용, 재사용, 보존 및 유지 관리 등을 통해 보존하여야 합니다.

### 3.3 유해물질

- 제3자 파트너는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모든 화학물질이 안전한 취급과 운반, 보관, 사용, 재활용 또는 재사용, 안전한 폐기를 위해 식별 표기, 라벨링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.

### 3.4 폐기물 관리

- 제3자 파트너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저감하며, 적법하게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,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 재활용 및 재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### 3.5 대기오염물질 관리

- 제3자 파트너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, 에어로졸, 부식성 가스, 분진,

오존파괴물질과 연소 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하며, 오염물질을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.

### 3.6 물질 규제 준수

- 제3자 파트너는 물질 재활용 및 폐기 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, 특정 물질 사용 금지 및 제한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
### 3.7 수자원 관리

- 제3자 파트너는 수자원 사용과 방출 기록을 감시하고, 보존 방법을 모색하여 오염 경로를 통제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모든 폐수를 방출 또는 폐기하기 전 법규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, 폐수 처리 시스템 성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### 3.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

- 제3자 파트너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감축 과제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.

### 3.9 동물 복지

- 제3자 파트너는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실험을 수행할 경우, 동물보호법 제23조(동물 실험의 원칙)를 준수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세계동물보건기구(WOAH)가 정한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.
  -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
  -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
  - 통증, 부상, 질병으로부터의 자유
  - 정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
  -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



## 4. 윤리 및 공정거래

제3자 파트너는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, 윤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### 4.1 청렴성

- 제3자 파트너는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모든 뇌물수수, 부당이득,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.

### 4.2 부당 이익 금지

- 제3자 파트너는 뇌물이나 부적절한 이익을 대가로 약속, 제안, 제공, 허가 또는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.
- 여기에는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획득 또는 부여하거나,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, 제안, 허가, 제공 및 수락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반부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

### 4.3 정보공개

- 제3자 파트너의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성사되어야 하며,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록하여 반영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의 노무, 안전보건, 환경 관리 실태, 경영활동, 지배구조,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사업계 기준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의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허위 진술은 용인되지 않습니다.

### 4.4 지식재산 보호

- 제3자 파트너의 지식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,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식재산권

의 보호하에 이뤄져야 합니다. 세아 및 다른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알게 된 기술, 정보 및 지식재산 등을 존중하고,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.

- 제3자 파트너는 타인의 특허,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됩니다.

#### 4.5 개인정보 보호

- 제3자 파트너는 사업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(협력회사, 고객사,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)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개인정보의 수집, 보관, 처리,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
#### 4.6 공정거래, 광고 및 경쟁

- 제3자 파트너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,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국내외 반독점,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의 모든 마케팅 및 광고는 윤리적이어야 하며, 관련 법률, 지침 및 업계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.

#### 4.7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

- 제3자 파트너는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, 내부 고발자의 비밀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. 또한 구성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 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 제기가 가능해야 합니다.

#### 4.8 책임있는 자재 관리

- 제3자 파트너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조달되는 광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지침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인권과 환경적으로 우려가 예상되는 분쟁광물(콩고 민주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생산되는 탄탈륨, 텅스텐, 주석, 금)을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

#### 4.9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

- 제3자 파트너는 수출제한과 관련된 각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, 지역 및 개인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#### 4.10 자금 세탁 및 탈세 방지

- 제3자 파트너는 국내외적으로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규와 테러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
#### 4.11 이해 상충

- 제3자 파트너는 업무상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이해상충 방지와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실제적이거나,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, 세아를 포함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.

### 5. 경영 시스템

제3자 파트너는 본 행동강령과 관련된 법규,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, 본 행동강령 준수, 본 행동강령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.

#### 5.1 준수 의지 표명

- 제3자 파트너는 기업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의 사회적, 환경적 책임, 성명서를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현지 언어로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.

#### 5.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

- 제3자 파트너는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해야 하며, 대표자는 정기적으로 경영 시스템 현황을 검토해야 합니다.

### 5.3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

- 제3자 파트너는 본 행동강령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,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, 모니터링하여 이해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.

### 5.4 리스크 관리

- 제3자 파트너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환경, 안전보건, 준법, 인권, 노동 관행 및 윤리적 위험성 파악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- 제3자 파트너는 각 위험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, 기술적 또는 행정적으로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여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
### 5.5 개선 목표

- 제3자 파트너는 사회, 환경 및 안전보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 및 실행 계획을 문서화해야 하며,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### 5.6 교육

- 제3자 파트너는 본 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정책, 절차 및 개선 목표를 이행하고,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교육해야 합니다.

### 5.7 커뮤니케이션

-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, 협력회사 및 고객에게 정책, 관행, 기대사항 및 성과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.

### 5.8 구성원 피드백, 참여 및 고충 처리

- 제3자 파트너는 본 행동강령에서 조건에 대해 구성원이 익명 또는 기명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, 접수된 피드백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.

## 5.9 감사 및 평가

- 제3자 파트너는 사회 및 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법규 요구사항, 본 행동강령의 내용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.

.

## 5.10 시정조치 프로세스

- 제3자 파트너는 내부 및 외부 평가, 검사, 조사 및 검토를 통해 확인된 미비사항을 적절한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
## 5.11 문서 및 기록

- 제3자 파트너는 본 행동강령의 준수, 회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 및 회사의 요구사항을 지키기 위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